

인천지방법원 2020. 10. 20 선고 2019나74372(본소), 2019나74389(반소) 판결 [공사대금
하자보수비 등 청구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0. 10. 20 선고 2019나74372(본소), 2019나74389(반소)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1. 28 선고 2017가단112647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

피고(반소원고)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

변론 종결 2020. 8. 18

판결선 고 2020. 10. 20

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1. 28. 선고 2017 가단 112647 (본 소),
2018가단124388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59,666,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8. 5.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27,936,841원 및 그 중 3,336,841원에 대하여는 2017. 7. 28.부터,24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1. 1. 부터 각이 사건반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 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저이심판결을 취소한다.

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

나.반소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,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제 3쪽 제 6행, 제 5쪽제7행, 제7쪽제20행의 각 '이 법원'을 각 '제1심 법원'으로, 제8쪽제9내지10행의 '이 사건 판결 선고일'을 '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'로 각 고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임진수 판사 신정수